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

[시행 2017. 7. 28.] [관세청고시 제2017-50호, 2017. 7. 28., 일부개정]

관세청(관세국경감시과), 042-481-7917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관세법」,「1972년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」,「국제도로 면세통과증서의 담보 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」의 시행과 컨테이너 및 내장물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"컨테이너"란 일종의 운송기기(리프트 반(lift van), 가반탱크(可搬탱크, movable tank) 또는 그 밖에 유사한 구조)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.
 - 가. 물품을 보관하기에 용이하도록 격실을 형성하고 있을 것
 - 나. 항구적으로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견고할 것
 - 다. 운송 도중에 재적재하지 않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물품의 수송이 용이하도록 설계될 것
 - 라. 운송수단간 환적이 용이하도록 설계될 것
 - 마. 물품의 적출입이 용이하도록 설계될 것
 - 바. 1m³ 이상의 내부용적을 가지고 있을 것
 - 사. 「1972년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」(이하 "컨테이너협약"이라 한다) 부속서 4에 제시된 컨테이너의 기술 적 조건을 충족할 것
- 2. "국제도로운송"이란 외국을 목적지 또는 출발지로 하여 운송 중 환적 없이 동일한 컨테이너로 물품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.
- 3. "FCL 컨테이너화물"이란 컨테이너에 들어 있는 화물 전부를 1명의 화주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.
- 4. "LCL 컨테이너화물"이란 여러 화주의 화물을 1개의 컨테이너에 같이 실은 것을 말한다.
- 제3조(컨테이너 및 항공기용 탑재용기의 수입) ① 국제도로운송을 위하여 수입되는 컨테이너(이하 "컨테이너"라 한다) 및 항공기용 탑재용기(이하 "ULD : Unit Load Device"라 한다)의 수입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.
 - 1. 컨테이너(항공기용 탑재용기)를 수송하는 선박회사(항공사) 또는 그 대리점
 - 2. 컨테이너(항공기용 탑재용기)를 수입하는 자 또는 그 대리점
 - 3. 컨테이너(항공기용 탑재용기) 임대회사
 - ② 컨테이너와 ULD 중 항공용컨테이너에 대한 수입신고는 「관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41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도로운송용 컨테이너목록을 수입지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에 갈음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목록 제출을 생략한다.
 - 1. 적하목록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에 컨테이너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2. 적하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항공기용컨테이너에 수출물품을 적입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의 전용장치구역으로 보다 반출하는 경우
- ③ 컨테이너목록을 제출받은 세관장은 기재사항을 심사한 후 이를 수리한다. 다만,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출된 적하목록에 대한 접수통보를 한 때에 신고수리된 것으로 본다.
- ④ 컨테이너에 내장된 소형 컨테이너는 컨테이너보세창고에서 컨테이너로부터 적출한 후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입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선박회사 소유가 아닌 수출입화주간에 운송용기로 사용되는 소형 컨테이너로서 선적서류상 거래조건이 재수출조건인 경우에는 내장화물의 수출입절차에 따른다.
- **제4조(컨테이너의 수출)** 컨테이너에 대한 수출신고는 컨테이너를 적재한 선박에 대하여 적하목록을 제출할 때까지 하여야 하며, 수출신고자와 수출신고방법 등은 수입시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5조(국산컨테이너의 통관) 국내에서 생산되어 처음 수출되는 컨테이너에 수출물품을 적입하여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의 수리와 동시에 제3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목록을 제출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수출물품을 적입할 수 있다.
- 제6조(수리용 부분품의 관세면제) ① 컨테이너의 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수리용 부분품에 대하여는 컨테이너협약 제10조, 법 제97조 및 「관세법 시행규칙」제50조제15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된 부분품의 사후관리는 「사후관리에 관한 고시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**제7조(ULD 반출입관리)** ① 수입신고수리가 되지 않은 ULD는 보세구역운영인의 신청에 의해 세관장이 공항내보세구역 또는 분류작업장 중 ULD 전용장치구역으로 지정한 장소에만 장치할 수 있다.
 - ② 보세구역운영인은 제1항에 따라 ULD가 전용장치구역에 반출입된 경우에는 반출입신고를 하여야 하며, 반출입대장(전산설비에 의하여 기록관리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.
 - ③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화물관리공무원으로 하여금 ULD의 반출입확인 및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.
- 제8조(컨테이너 승인단체) ① 「국제도로면세통과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」(이하 "국제도로운송협약"이라 한다) 제13조 및 컨테이너협약 제12조에 따른 컨테이너의 승인업무는 「선박안전법」제 60조에 따른 한국선급이 수행한다.
 - ② 한국선급은 국제도로운송협약 및 컨테이너협약에 따른 컨테이너승인에 관한 기준(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)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9조(개별승인신청) ① 국제도로운송협약 제13조 및 컨테이너협약 제12조에 따라 컨테이너의 개별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컨테이너 구조상의 중요한 특징을 표시한 도면 및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선급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.
 - 1. 컨테이너의 종류, 형식, 기호 또는 번호, 자체중량 그 밖에 구조상의 중요한 특징
 - 2.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
- 제10조(형식승인신청) ① 국제도로운송협약 제13조 및 컨테이너협약 제12조에 따라 컨테이너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컨테이너의 설계도면과 제조사양서를 첨부하여 한국선급에 제출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.

- 1. 제조공장의 명칭 및 소재지와 제조회사의 명칭, 주소 및 대표자 성명
- 2. 제조예정수량
- 3. 컨테이너의 종류, 형식, 기호 또는 번호, 자체중량, 그 밖에 구조상의 중요한 특징
-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- 1. 승인기관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해당 형식의 원형 컨테이너를 승인기관에 제시할 것
- 2. 해당 형식별 컨테이너의 생산기간 중 어느 때라도 제조과정에 있는 컨테이너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할 것
- 3. 설계도 또는 설계사양서의 변경에 대하여는 변경을 가하기 전에 승인기관에 통보할 것
- 4. 승인판에 요구되는 표기 이외에 설계형식의 식별번호 또는 문자와 동형시리즈 컨테이너의 일련번호(제조자번호)를 컨테이너의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할 것
- 제11조(개별승인 및 형식승인) ① 한국선급은 제9조의 개별승인신청 또는 제10조의 형식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설계도면 및 제조사양서에 의한 서면심사 후 원형컨테이너의 검사를 실시하여 컨테이너협약의 부속서4에 제시된 컨테이너의 기술적 조건에 적합할 때에는 개별승인증명서 또는 형식승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 - ② 컨테이너 제조자는 이미 형식승인을 받은 설계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이 기재된 도면 및 자료를 제출하여 한국선급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**제12조(컨테이너의 검사)** ① 컨테이너 생산자가 제11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 컨테이너를 생산한 때에는 형식승인 사항과 부합되는지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한국선급이 정한 검사신청서를 검사예정 장소를 관할하는 한국선급(지부)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③ 한국선급이 컨테이너 검사를 하는 때에는 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 검사하여야 하며 해당 컨테이너의 제조공장, 컨테이너 보세창고에서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13조(컨테이너의 승인표시) ① 컨테이너에 대하여 검사합격판정을 한 때에는 국제도로운송을 위하여 컨테이너를 사용하기 전에 해당 승인을 얻은 것을 증명하는 금속제 승인판을 컨테이너 문 또는 그 밖에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견고하게 부착하되,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승인판을 부착하는 때에는 해당 컨테이너의 종류, 기호 및 번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.
 - ② 한국선급은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승인판을 부착하게 하는 때에는 형식승인 업체의 승인판에 대한 기장상태 및 승인판을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 등을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.
 - ③ 한국선급은 컨테이너에 대해 개별승인 또는 형식승인 및 검사를 한 때에는 업무처리대장을 기록 유지하고, 승인신청서, 심사 및 검사의 기록, 승인증명서 사본 등 관계 서류를 일괄 정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, 월별 업무실적을 그 다음 달의 5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14조(컨테이너 수리) ① 컨테이너를 수리한 자는 컨테이너협약 부속서4의 기술적조건의 변경을 초래하는 수리를 한 경우에는 자체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한국선급에 컨테이너수리작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② 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수리작업 완료보고서를 제출받은 한국선급은 제15조에 따른 컨테이너승인의 효력 상실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제15조(컨테이너 승인의 효력상실) ① 제11조에 따라 승인을 얻은 컨테이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컨테이너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다.
 - 1. 해당 컨테이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을 수리하였거나 컨테이너협약 부속서4에 제시된 컨테이너의 기술적 조건의 변경을 초래하는 개조를 한 때
 - 2. 그 밖에 해당 컨테이너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승인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 때
 - ② 컨테이너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 컨테이너는 국제도로 운송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6조(업무감독) 관세청장은 컨테이너 승인 및 검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한국선급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시에 업무 및 재산에 대한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- **제17조(컨테이너내장 수입물품의 수입신고)** 수입물품을 컨테이너에 내장한 상태로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물품은 FCL 화물에 한한다.
- 제18조(컨테이너내장 수출물품의 장치) ① 컨테이너에 내장하여 수출하려는 물품(이하 "컨테이너수출물품"이라 한다)은 수출신고 수리전에라도 컨테이너에 적입할 수 있다. 이 경우 적입된 컨테이너의 기호 및 번호를 수출신고서 비고란에 기입하여야 하며 수출신고 수리 후 컨테이너에 적입될 물품은 "컨테이너 적입예정"이라고 기입한다.
 - ② 세관장이 컨테이너수출물품을 검사대상물품으로 지정한 때에는 수출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컨테이너에 적입된 물품을 컨테이너로부터 적출하여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.
 - ③ 선적지 보세구역운영인은 수출신고서에 "컨테이너 적입예정"이라고 기재된 컨테이너수출물품이 반입된 때에는 컨테이너의 기호 및 번호를 확인하여 수출화물관리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.
 - ④ 컨테이너수출물품이 잘못 적입된 경우에는 세관장의 보수작업 승인을 받아 해당 컨테이너보세창고 내의 수출입화물 집하소에서 환적할 수 있다.
- **제19조(통관된 컨테이너내장물품등의 반출)** ① 통관된 컨테이너 수입물품의 처리에 관하여는 「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」제19조를 준용한다.
 - ② 컨테이너에 내장된 상태로 수입신고가 수리된 컨테이너수입물품을 컨테이너에서 적출하려는 경우에는 컨테이너화물조작장(CFS)에서 하여야 한다.
- 제20조(세관봉인의 시봉 및 관리) ① 세관장은 시봉에 사용한 봉인과 회수된 봉인을 "세관봉인관리대장"(별지 제 3호 서식)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, 세관봉인은 철제금고 등에 보관하여 그 관리를 철저히 하고, 회수된 봉인은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멸각처리 하여야 한다.
 - ② 자율관리보세구역인 경우 세관장은 세관봉인을 보세사에게 지급하여 시봉에 관한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. 이경우 보세사는 지급받은 세관봉인과 회수한 세관봉인을 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, 세관봉인관리대장을 매익월 10일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③ 「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」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 화물 등 특정물품의 보세운송에 사용되는 세관봉인은 특정물품 간이보세운송업자에게 이를 지급하고 특정물품 간이보세운송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매 익월 10일까지 세관봉인 관리대장을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21조(재검토기한) 관세청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칙 <제2017-50호,2017.7.28.>

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